# 「신로회복」과 「혁신」을 위한 「보험기(혁언이」 서면 안건

2024. 8.

관계기관 합동

## 순 서

I.	보험회사의	장기요양서비스	부수업무	허용	1

- II. 외국인 보험가입 관련 합리적 개선방안----- 2
- Ⅲ.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추진 -----3

Ⅳ. 건보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… 5

#### 1.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

#### 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- □ **인구 고령화**로 **장기요양서비스**\* 등 시니어케어에 대한 **사회적 수요**가 **지속적**으로 **증가**하고 있음에도,
  - \*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장기간 시설에 입소(수용)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 요양기관과 재가요양기관으로 구분(노인장기요양보험법 §31)
- 의료인력 채용 등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\*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한 상황
  - \*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경영건전성, 계약자 보호,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업무(보험업법 §11의2)

#### 【 개선방안 】

- □ 장기요양서비스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\*이 인정되므로 부수 업무로 영위를 허용
  - \* 보험업 본연적 역할인 노후보장 등에 기여
- 다만, 인력·물적시설 등 신규투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등에
 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\*
  - \*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토지·건물의 사용권을 통해서도 설치 가능하므로 시설 요양기관에 비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

#### 【 기대효과 】

- □ **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**(재가요양기관)으로 **보험회사**에 **성장**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
- 소비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공급으로 소비자 후생
  증진 등 효용 제고

#### Ⅱ.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추진

#### 【주요 개선방안】

- ① 보험상품 이해도 제고 위한 외국어 안내자료 마련
-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가입 보험상품\*에 대한 안내자료를 주요 외국어로 제공(중국어, 베트남어 등)

* 외국인 근로?	다 의무보험	개요
-----------	--------	----

	·		
구분	상해보험	귀국비용보험	
가입 기한	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	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	
보험가입금액	구분사망장해상해3천만원최대 3천만원질병1.5천만원1.5천만원	국가에 따라 40~60만원	
근거	외국인고용법 §23	외국인고용법 §15	

- ② 원활한 보험가입 위한 외국어 상담 체계 마련
- 보험가입 관련 외국어 지원 인력 Pool을 보험사별로 체계화하여 고객 요청 시 연결·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
- ③ 외국인 가입상품 합리적 개선
- 외국인 보험가입 관련 도덕적 해이(부실 고지 등) 방지 방안\* 마련
  - \* 외국인 전용 상품 개발, 외국인 비자 유형별 인수기준 재검토, 질병담보 가입요건 강화, 건강정보 제공 할인특약 활성화 등 검토
- 4 외국인 보험료 절감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
- 외국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외보험 가입 경력 인정에 필요한 중명서 안내 강화(해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 등)

#### 【향후계획】

- □ 추가 보험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방안 마련 및 시행
- ☞ 외국인계좌 개설 개선방안은 「은행권 혁신 TF」에서 검토 예정

#### Ⅲ. 항공기 지연 지수(指數)형 보험 도입 추진

#### 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- □ 코로나19 종식선언 후, 해외 여행 증가에 따라 항공 운송 불이행·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상황
- □ **항공편이 결항·4시간 이상 지연**되는 경우 식음료비,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**가입금액 한도** 內 실손보상하는 상품은 판매 중이나
- 지급보험금 대부분이 가입금액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보험금
  청구 증빙자료(항공사 확인증, 영수증) 준비 등에 따른 불편 존재

#### 【 개선방안 】

- □ 별도 자료제출 없이 **사전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**하는 **지수형 상품** 개발로 **소비자의 편익을 중진**하고 **운영의 편의성**을 도모
- 국내 공항\*에서 출발(해외 공항 출발은 제외)하는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,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 지급
  - \* 인천국제공항 출발 시 적용되는 참조순보험요율 보험사 제공(6월), 8월 중 국내 全공항 출발 시 적용되는 단일 요율 보험사 제시 예정
- □ 가입자가 **동종 상품에 다수 가입할 유인**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,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등 **상품 개발**을 위한 **체크리스트** 마련
  - < 항공기 지연 지수형상품 개발시 주요 고려사항 >
  - (가입 대상) 여행자보험에 가입 시에만 중복가입이 확인되므로, 여행자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도입
  - o (보험 가입) 도덕적해이(예시: 기상예보를 통한 태풍접근 예상 등)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가능기간을 출국 7일 이전까지로 제한\*
    - \* 단, 항공편 취소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가입기간 운용도 가능
  - (모럴해저드 방지) 보험사는 신규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금액이 과도 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수립하고 사후 중복가입 확인 시 합리적인 지급방식 마련

#### 참고1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개요

- □ (개요)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**국제선 여객기가 결항되거나, 출발이**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
- □ (보상 수준)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, 추가 지연시간별 2만원씩 최대 10만원 지급(결항시 10만원)

#### < 항공기 출발 결항 및 지연시간에 다른 보험금 지급액 >

지연시간	2시간 이상	3시간 이상	4시간 이상	6시간 이상
	3시간 미만	4시간 미만	6시간 미만	및 결항
누적 보험금 지급액	4만원	6만원	8만원	10만원

- 주) (예시)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지연 시 4만원 지급 후, 추가 1시간 지연 시마다(4시간 이후는 2 시간 지연 시) 2만원씩 지급하여 누적 최대 10만원 지급
- □ (편의성)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 시,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중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
- (보험료 절감) 손해조사 업무 감소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\* 기대 \* 손해조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실손형 보험의 약 32.4% 수준임
- □ (보험료 수준) 항공기 출발 1회당 보험료\*는 1,000~1,500원 수준\*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
- ※ 실손형과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비교

구분	실손형 항공기 지연보험	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
보상 조건	·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· 항공편 결항	·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 · 항공편 결항
보험금 지급액	·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, 전화 통화 비용, 숙박비 및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로서 증빙을 통해 확인된 실제 손해액	· 결항 및 지연 시간대별로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
보험금 청구	· 항공기 지연/결항 확인서 · 항공기 탑승권 사본 · 비용발생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등	· 보험사가 항공정보포털 등을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여부 확인 시 별도 증빙 제출 필요 없음

### Ⅳ.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

#### 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- □ 보험사 위험률 개발에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'공단')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, **개별 보험사**에서 **공단**에 **데이터 공개 요청** 
  - \* 공단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자에게 정보 제공 중
- 공단은 보험사 데이터 신청 급증으로 다소 엄격한 자료제공
  기준을 마련하여 요청을 제한\*
  - \* 1인당 신청 가능건수를 1건으로 제한, 질병코드를 3가지로 제한 등 신청범위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도입
- □ 제한적 데이터로는 위험률 개발이 어려운 보험사는 **보험개발원을 통한 全 상병통계\* 입수 및 보험사 제공**을 건의
  - \*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로 개인을 특정군으로 묶어 집단의 수치로 기록된 질병 관련 통계
- 현재 공단 운영규정으로 보험개발원이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
  자료를 보험사(제3자)에게 제공은 제한 중

#### 【 개선방안 】

- □ 개발원이 **상병통계를 입수**하여 **보험사에게 통계를 제공**하는 방식으로 **절차 개선 추진** 
  - 개발원은 정보공개청구절차가 아닌 보험업법 제176조 제11항"에
    근거하여 공단에 상병통계 요청\*
    - \*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한 장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음
- ※ 원활한 통계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-보험개발원간 세부 절차·방법 등 추가 협의 예정